

##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代案)

議案 番號	
----------	--

提案年月日：1993. 5. .  
提案者：政治關係法審議  
特別委員會委員長

### 一. 代案의 提案經緯

1993年4月20日 李富榮·朴相千·李協·姜秀淋·金元雄·朴啓東·元惠榮·李錫玄議員 外 87人이 發議한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과 1993年5月4日 申相式·金重緯·南在斗·金榮駟·白南治·崔在旭·河舜鳳·朴範珍·成武鎬議員 外 158人이 發議한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을 審査한 結果, 第161回國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1993年5月20日)에서 이를 각각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委員會代案을 提案하기로 함.

### 二. 代案의 提案理由

不正腐敗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信賴받는 公職風土를 造成하고 새로운 公職者倫理를 確立하기 위하여 財産登錄 義務者의 範圍와 財産登錄機關을 擴大하고 審査를 강화하는 한편, 高位公職者 및 公職候補者의 登錄 財産公開를 制度化하고 公職을 이용한 不正한 財産增殖을 規制하여 財産

登錄制度의 實效性 확보하는 등 現行 制度上의 未備點을 改善·補完하려는 것임.

### 三. 代案의 主要骨子

#### 가. 財産登錄義務者의 範圍擴大(案 第3條 및 第6條).

財産登錄義務者를 現行 3級이상의 公務員에서 4級이상의 公務員으로, 軍人은 將官級 將校에서 大領이상의 將校로 擴大하는 한편, 地方議會議員을 登錄義務者로 追加하고 登錄義務者가 退職한 경우에도 退職後 1月이내에 財産變動事項을 申告하도록 함.

#### 나. 登錄對象財産의 範圍(案 第4條 및 第12條)

登錄對象財産의 範圍에 非營利法人에의 出捐財産과 外國에 있는 財産을 포함하고 財産登錄對象 親族의 範圍를 現行과 같이 本人·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으로 하고, 登錄事項에 대한 審査에 誠實히 응하도록 하되, 直系尊卑屬중 被扶養者가 아닌 者는 자신의 財産登錄事項의 告知를 拒否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는 施行令에 委任하였던 登錄對象 動産의 種類 및 財産의 種類別 價額의 算定方法을 法律에 直接 規定함으로써 登錄財産의 範圍와 價額의 算定方法을 明確히 함.

#### 다. 財産登錄機關의 多元化(案 第5條).

財産登録機關이 國會事務處, 法院行政處, 憲法裁判所事務處, 國防部 및 總務處 5個機關이던 것을 각 憲法機關의 事務處, 政府의 院·部·處·廳(財産公開對象公職者인 경우에는 總務處), 地方自治團體, 地方議會, 教育委員會 및 市·道の 教育廳으로 多元化 함.

라. 公職者倫理委員會 의 多元化 및 登録財産에 대한 審査의 強化(案 第8條 및 第9條).

公職者倫理委員會를 國會, 大法院, 憲法裁判所, 政府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외에도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地方自治團體, 市·道の 教育廳에도 두도록 하고 公職者倫理委員會에 登録財産 審査權을 주어 資料要求·調査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하며, 審査結果 虛偽 登録의 嫌疑가 있다고 疑心되는 登録義務者에 대하여 出席을 要求하여 陳述을 받거나 現地調査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에게 調査를 依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法務部長官은 그 調査結果를 公職者倫理委員會에 通報하도록 함.

마. 審査結果의 處理(案 第8條의2)

公職者倫理委員會는 財産登録事項의 審査結果 登録對象財産을 虛偽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警告 및 是正措置, 過怠料處分, 日刊

新聞 광고란을 통한 虛偽登錄事實의 公表, 解任 또는 懲戒議決의 요청의 處分을 하도록 함.

바. 登錄財産 公開制度의 導入(案 第10條).

從前에는 財産登錄 事項을 原則적으로 公開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國家의 政務職 公務員,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議員, 1級 公務員, 高等法院部長判事級 이상의 法官과 檢事長級 이상의 檢事, 中將이상의 將官級 將校, 治安監 이상의 警察公務員과 市·道의 警察廳長, 地方國稅廳長과 2·3級 公務員인 稅關長등의 公職者의 경우에는 本人·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의 登錄財産을 登錄 및 變動申告期間 滿了후 1月이내에 官報 또는 公報에 掲載토록 함으로써 公開를 制度化 하였으며, 위의 職에서 退職한 者도 變動申告期間 滿了후 1月이내에 公開하도록 함.

사. 公職候補者의 財産公開(案 第10條의2).

각종 公職選舉의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 登錄對象財産申告書를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提出하고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公告時에 그 申告事項을 公開하도록 하며, 任命에 國會의 同意를 要하는 公職者의 任命同意案 또는 國會에서 選出하는

公職者의 選出案을 提出하는 때에는 當該 公職候補者의 登錄對象 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議長은 이를 公開하도록 함.

아. 地方議會議員등의 財産登錄機關과 審査機關(案 第3條, 第5條 및 第9條)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所屬公務員의 財産登錄機關은 地方議會와 地方自治團體로 각각 分離하는 한편, 그 登錄財産을 審査하는 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地方自治團體別로 하나만 두도록 함.

자. 國會에의 報告(第20條의2).

國會·大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政府 公職者倫理委員會는 每年 定期國會에 前年度의 財産登錄·贈物申告 및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에 관한 實態와 監督 其他 活動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提出하도록 함.

차. 罰則의 強化(案第23條 내지 第26條)

이 法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財産登錄拒否의 罪·出席拒否의 罪·虛偽資料提出 등의 罪를 新設하고 登錄義務者가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0萬원 이하의 罰

金에 處하도록 하는 職務上 秘密利用財物取得의 罪를 新設함.

카. 財産의 登錄 및 公開에 관한 經過措置(案 附則第2條).

經過 規定을 두어 이 法 施行當時의 財産登錄義務者는 이 法 施行日  
부터 1月이내에 財産을 登錄하도록 하고,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는 公  
開對象者의 財産登錄事項을 그 登錄期間 만료후 1月 이내에 公開하도  
록 함.

##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條(目的) 이 法은 公職者 및 公職候補者의 財産登錄과 登錄財産公開를 制度化 하고, 公職을 이용한 財産取得의 規制·公職者의 膳物申告·退職 公職者의 就業制限등을 規定함으로써 公職者의 不正한 財産增殖을 방지 하고 公務執行의 公正性을 確保하여 國民에 대한 奉仕者로서의 公職者의 倫理를 確立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章의 題目 "財産登錄"을 "財産登錄 및 公開"로 한다.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9號 및 第11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 條第2項을 削除한다.

1.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國會議員등 國家의 政務職公務員
2.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議員
3. 4級 이상의 一般職인 國家 및 地方公務員과 이에 相當하는 報酬를 받는 別定職公務員

4. 4級 이상의 外務公務員 및 國家安全企劃部の 職員
5. 法官 및 檢事
6. 大領이상의 將校 및 이에 상당하는 軍務員
7. 教育公務員중 總長·副總長·大學院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포함한  
다) 및 專門大學長과 大學에 준하는 各種 學校의 長, 서울特別市·  
直轄市·道の 教育監·教育長 및 教育委員
8. 總警이상의 警察公務員과 消防正 및 地方消防正 이상의 消防公務員
9.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總裁  
및 監事, 銀行監督院長,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畜  
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會長 및 常任監事
11. 기타 國會規則·大法院規則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定分野의 公務  
員과 公職有關團體의 職員

第4條第1項本文중 "財産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財産, 非營利法人에의  
出捐財産과 外國에 있는 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第4條第2項第3號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項 내지  
第6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다음 각目の 動産·有價證券·債權·債務 및 無體財産權

가.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 이상의 現金(手票를 포함한다)

나.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 이상의 預金

다.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 이상의 株式·國債·公債·會社債 등 有價證券

라.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 이상의 債權

마.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 이상의 債務

바. 所有者別 合計額 500萬원 이상의 金 및 白金(金製品 및 白金製品을 포함한다)

사. 品目當 500萬원 이상의 寶石類

아. 品目當 500萬원 이상의 骨董品 및 藝術品

자. 券當 500만원 이상의 會員券

차. 所有者別 年間 1,000萬원 이상의 所得이 있는 無體財産權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할 財産의 種類別 價額의 算定方法 또는 表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土地는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公示地價

2. 아파트·연립주택 등 共同住宅은 所得稅法에 의한 基準時價

3. 第2號의 共同住宅을 제외한 住宅·商街·빌딩·오피스텔 기타 不動産은 垡地에 대하여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로 算定한 價額과 建物에 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告示하는 公正價額중 最高價額(取得價額이 있는 경우에는 取得價額을 併記한다)으로 算定한 價額의 合計額
4. 不動産에 관한 規定이 準用되는 權利는 種類·數量·內容 등 明細(取得價額이 있는 경우에는 取得價額을 포함한다)
5. 現金·預金·債權 및 債務는 그 金額
6. 國債·公債·會社債 등 有價證券은 額面價額
7. 株式중 上場株式은 財産登錄基準日의 證券去來所 最終價格(證券去來所가 財産登錄 基準日 이전에 마감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最終價格), 非上場株式은 額面價額
8. 合名會社·合資會社 및 有限會社의 出資持分은 그 持分比率와 最近事業年度의 그 會社 年間賣出額
9. 金 및 白金(金製品 및 白金製品을 포함한다)은 그 種類·함량과 重量
10. 寶石類는 種類·크기·色相 등 明細

11. 骨董品 및 藝術品은 種類·크기·作家 및 製作年代 등 作品의 明細
12. 會員券은 取得價額. 다만, 골프會員券은 所得稅法에 의한 基準時價로 한다.

④第3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登錄할 財産의 價額 算定方法과 表示方法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에 대하여 所有者別로 그 財産의 取得日字·取得經緯·所得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중 非營利法人에의 出捐財産은 다른 登錄對象財産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法人에 있어서의 登錄義務者의 職位를 明示하여야 한다.

第5條第1項本文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3年"을 "3年(退職의 경우에는 1年)"으로 하고, 同項 第3號 내지 第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에 第6號 내지 第11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憲法裁判所長 · 憲法裁判所裁判官 및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은 憲法裁判所事務處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各級選舉管理委員會 所屬公務員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處

5. 政府의 院·部·處·廳所屬公務員은 당해 院·部·處·廳
6. 監查院所屬公務員은 監查院事務處
7. 國家安全企劃部所屬公務員은 國家安全企劃部
8. 地方自治團體所屬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9. 地方議會議員과 地方議會所屬公務員은 당해 地方議會
10.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所屬公務員은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
11.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委員會의 教育委員은 당해 教育委員會
12.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은 당해 公職有關團體를 監督하는 院·部·處·廳. 다만, 서울特別市·直轄市·道の 監督을 받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의 경우에는 서울特別市·直轄市·도로 한다.
13. 第1號 내지 第12號의의 登錄義務者, 第5號 내지 第7號 및 第12號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의 院·部·處·廳 所屬公務員과 監查院·國家安全企劃部 所屬公務員 및 公職有關團體의 任員으로서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登錄事項을 公開하는 公職者는 總務處 第6條第1項但書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同條第2項 및 第3項중 "第1項"을 "第1項 및 第2項"으로 하여 이를 각각 第3項 및 第4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登錄義務者が 退職한 때에는 退職후 1月이내에 該해의 1月1日(1月1日 이후에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부터 退職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財産상의 變動事項을 退職당시의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退職후 1月이내에 다시 登錄義務者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前段중 "登錄義務者가"를 "登錄義務者(第6條第2項의 退職公職者를 포함한다. 이하 第8條·第10條·第12條 및 第13條에서 같다)가"로 한다.

第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登錄事項의 審査) ①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된 事項을 審査하여야 한다.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が 登錄財産의 一部를 過失로 漏落하거나 價額合算등에 誤記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 期間을 정하여 財産登錄書類의 補完을 命할 수 있다.

③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錄義務者에게 資料의 提出要求 또는 書面質疑를 하거나 事實確認을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에게

解明 및 疏明資料提出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職有關機關 기타 公共機關 또는 金融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報告나 資料提出등을 要求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機關·團體의 長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報告나 資料提出등을 拒否할 수 없다.

⑤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와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기타 財産登錄事項의 關係人에 대하여 出席을 要求하고 陳述을 받을 수 있다.

⑥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 虛偽登錄의 嫌疑가 있다고 의심되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는 期間을 정하여 法務部長官(軍人 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調査를 依頼하여야 한다.

⑦法務部長官 또는 國防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依頼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실시하게 하고 그 調査結果를 公職者倫理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 또는 檢察官의 調査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法令(軍事法院法을 포함한다)중 搜查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人身拘束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虛偽登

錄의 嫌疑가 인정되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는 所屬機關·團體의 長에게 虛偽登錄事實을 通報하여 懲戒 기타 적절한 措置를 要求하거나 告發하여야 한다.

⑩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變動申告事項을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한 후 3月이내에 財産公開對象 公職者 全員에 대한 審査를 完了하여야 한다.

⑪公職者倫理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財産公開對象者가 아닌 登錄義務者의 登錄事項에 대한 審査를 그 登錄機關의 長 기타 關係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그 委任을 받은 機關의 長은 審査結果를 管轄 公職者倫理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⑫第2項 내지 第8項의 規定은 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頼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條의2(審査結果의 處理) ①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審査結果 第4條에 規定하는 登錄對象財産을 虛偽로 기재한 事實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의 措置

를 하여야 한다.

1. 警告 및 是正措置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
3. 日刊新聞 廣告欄을 통한 虛偽登錄事實의 公表
4. 解任 또는 懲戒(罷免을 포함한다) 議決要請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 各號의 措置중 第3號의 措置는 다른 措置에 부수하여 併科할 수 있다.

第9條第1項本文중 "審議"를 "審査"로, "國會·大法院·憲法裁判所 및 政府에"를 "國會·大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政府·地方自治團體 및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에"로 하고, 同項 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 第2號를 第3號로 하고, 同項에 第2號 및 第4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第10條第1項에 規定하는 財産公開對象 公職者에 대한 登錄事項의 審査와 그 結果의 處理
2. 第8條第1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承認
4.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權限으로 정한 事項

第9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에 第5號 내지 第8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各級 選舉管理委員會 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5. 서울特別市·直轄市·道公職者倫理委員會는 서울特別市·直轄市·道所屬公務員, 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 서울特別市·直轄市·道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6. 市·郡·區(自治區인 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公職者倫理委員會는 市·郡·區所屬公務員, 市·郡·區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7.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는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所屬公務員 및 教育委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8.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號 내지 第7號의의 公職者와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第9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項 및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③公職者倫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1人을 포함한 9人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은 法官·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1人을 포함한 5人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3人은 法官·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④公職者倫理委員會의 委員의 任期, 選任 및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정한다.

1.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會規則
2. 大法院公職者倫理委員會는 大法院規則
3. 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規則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5.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大統領令
6. 서울特別市·直轄市·道公職者倫理委員會 및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와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⑤公職者倫理委員會는 이 法과 第4項 各號에 規定된 規則·大統領令 또는 條例의 범위안에서 그 運籌에 관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條의 題目을 "登錄財産의 公開"로 하고 同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①公職者倫理委員會는 管轄登錄義務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職者 本人과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의 財産에 관한 登錄事項과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變動事項 申告內容을 登錄 또는 申告期間 만료후 1月 이내에 官報 또는 公報에 掲載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1.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國會議員·國家安全企劃部の 部長 및 次長등 國家의 政務職公務員
2.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議員
3. 1級인 一般職 國家 및 地方公務員과 이에 相當하는 報酬를 받는 別定職公務員
4. 特1級·特2級 및 1級인 外務公務員과 國家安全企劃部の 企劃調整室長
5. 高等法院部長判事級이상의 法官과 檢事長級이상의 檢事 및 次長檢事를 두는 支廳의 長인 檢事
6. 中將이상의 將官級 將校
7. 教育公務員중 總長·副總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및 專門大學長과 大學에 준하는 各種 學校의 長, 서울特別市·直轄市·道の 教育監 및 教育委員

8. 治安監이상의 警察公務員 및 서울特別市·直轄市·道の 警察廳長
9. 地方國稅廳長 및 2級 또는 3級 公務員인 稅關長
10.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總裁 및 監事, 銀行監督院長,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의 中央會의 會長·常任監事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職有關團體의 任員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의 公務員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職에서 退職한 者(第6條第2項의 경우에 한한다.

第10條第2項중 "登錄機關의 長의"를 "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公職者倫理委員會 또는 登錄機關의 長의"로 한다.

第10條第3項本文중 "登錄機關의 長은"을 "公職者倫理委員會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으로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許可를 할 수 없다"로 하고 同項 第2號 및 第3號를 각각 第3號 및 第4號로 하며, 同項에 第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4項을 削除한다.

2. 國會議員이 國會法第128條第1項,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第10條第1項,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政監査·

調査 등의 資料를 要求하거나 議政活動으로서 特定公職者의 구체적 非  
違事件 관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財産登錄事項  
의 全體細目을 外部에 公開할 수 없다.

第1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0條의2(公職選舉候補者 등의 財産公開) ①大統領·國會議員·地方自治團體

의 長·地方議會議員 選舉의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 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管轄  
選舉管理委員會에 提出하고,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公告時에  
候補者의 財産申告事項을 公開하여야 한다.

②大法院長·憲法裁判所의 長·國務總理·監查院長·大法官·國會事務總長  
등 그 任命에 國會의 同意를 要하는 公職者의 任命同意案 또는 憲法裁  
判所裁判官·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등 國會에서 選出하는 公職者의 選  
出案을 提出하는 때에는 당해 公職候補者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  
한 登錄對象 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議長은 지체  
없이 그 公職候補者의 財産申告事項을 公開하여야 한다.

③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와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財産申告事項을 審査하여 그 審査結果를 公開할 수 있다.

④第3項의 審査에는 第8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申告書의 書式·公開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國會 規則 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定한다.

第12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登錄機關의 長등의"를 "公職者倫理委員會등의"로, "審査 및 調査에"를 "審査에"로 하며, 同條第3項중 "登錄機關의 長등의"를 "公職者倫理委員會등의"로, "審査 및 調査에 協調하여야 한다."를 "審査에 誠실히 應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登錄義務者는 第4條에서 規定하는 登錄對象財産과 그 價額·取得日字·取得經緯·所得源등을 財産登錄書類에 虛偽로 記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條第3號의 者중 被扶養者가 아닌 者는 자신의 財産登錄事項의 告知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登錄義務者는 財産登錄書類에 그 事由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13條중 "不實登錄"을 "虛偽登錄"으로 한다.

第1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4條의2(職務上 秘密을 이용한 財物取得의 禁止)登錄義務者는 그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 利益을 取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第15條第1項 前段중 "公務員"을 "公務員(地方議會議員 및 教育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第22條第1項 및 第23條第1項에서 같다)"로 한다.

第17條第2項 및 第18條중 "憲法裁判所規則"을 "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한다.

第19條第1項중 "憲法裁判所事務處長. 이하같다)"를 "憲法裁判所事務處長,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이하같다)"로 한다.

第20條중 "財産登錄"을 "財産登錄 및 公開"로 한다.

第2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0條의2(國會에의 報告) ①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大法院公職者倫理委員會·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每年 定期國會에 前年度의 財産登錄·膳物申告 및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에 관한 實態와 監督 기타 活動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年次報告書 作成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의 題目을 "委任規定"으로 하고 同條중 "또는 大統領令으로"를 "·中

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大統領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로 한다.

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懲戒등) 公職者倫理委員會는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

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事由로 하여 解任 또는 懲戒議決을 要求할 수 있다.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登錄을 하지 아니한 때
2. 第6條第1項·第3項 및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變動事項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疏明資料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第10條第2項(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없이 登錄事項을 閱覽·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虛偽登錄등 不誠實하게 財産登錄을 한 때
5.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등의 登錄事項의 審査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第13條後段(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登錄事項을 이 法이 정한 외의 目的으로 利用한 때
7. 第14條(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

여 財産登錄事項을 다른 사람에게 漏泄한 때

8. 第1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받은 贈物을  
申告하거나 引渡하지 아니한 때

第23條 및 第24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職務上 秘密을 이용한 財物取得의 罪) ①公務員·政府投資機關(再投資機關을 포함한다) 및 地方公企業法 第5條·第49條·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直營企業·地方公社 및 地方公園의 任職員이 그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利用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②第1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③第1項의 罪를 범한 者 또는 그 情을 아는 第三者가 第1項의 罪로 인하여 取得한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은 이를 沒收 또는 追徵한다.

第24條(財産登錄拒否의 罪) ①財産登錄義務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登錄을 拒否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②第10條의2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選舉候補者등이 正當한

사유없이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25條 내지 第30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5條(虛偽資料提出등의 罪) 公職者倫理委員會(第8條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로부터 財産登錄事項에 관한 權限을 委任받은 登錄機關의 長등을 포함한다. 이하 第26條에서 같다)로부터 第8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나 資料提出등을 요구받은 各 機關·團體의 長이 正當한 사유없이 虛偽報告나 虛偽資料를 提出한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6條(出席拒否의 罪) 公職者倫理委員會로부터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登錄事項의 審査를 위하여 出席을 요구받은 登錄義務者 기타 參考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出席要求에 不應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7條(無許可 閱覽·複寫의 罪)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없이 財産登錄事項을 閱覽·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8條(秘密漏泄의 罪)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登錄業務에 從事하

거나 하였던 者 또는 그 밖의 者로서 職務上 財産登錄事項을 알게 된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公開된 財産登錄事項의의 財産登錄事項을 漏泄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9條(就業制限違反의 罪)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退職公職者가 營利私企業體에 就業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0條(過怠料) ①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8條의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 하여 過怠料賦課 對象者로 決定한 者에 대하여는 2,0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過怠料賦課對象者에 대하여는 그 違反事實을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裁判의 管轄法院에 通報하여야 한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1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議會議員, 教育委員, 地方自治團體의 所屬公務員 및 그 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에 대한 財産登錄 및 登錄事項公開에 관한 規定은 公布後 2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의 登錄義務者는 이 법 施行日부터 1月

이내에 이 법 施行日 현재의 財産을 登錄機關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이 법 施行당시의 財産公開對象 公職者에 대하여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을 그 登錄期間 만료후 1月이내에 官報 또는 公報에 掲載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③이 법 施行당시의 財産公開對象 公職者の 登錄事項에 대하여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후 3月이내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完了하여야 한다.

④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機關에 提出된 公職者財産 登錄書類는 이 법 施行日에 이를 廢棄한다.

## 條 文 對 比 表

現 行	改 正 案
<p>第1條(目的) 이 法은 公職者의 財産登 錄, 膳物申告 및 退職公職者의 就業 制限 등을 정함으로써 公職者의 不 正行爲를 防止하고, 公務執行의 公 正性を 확보하여 깨끗한 公職社會를 具現하며, 나아가 公職者로 하여금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그 責 任을 다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第2章 財産登錄</u></p> <p>第3條(登錄義務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職者(이하 "登錄義務者" 라 한다)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財産을 登錄하여야 한다.</p> <p>1. <u>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政務職 公務員</u> (新 設)</p> <p>2. <u>3級</u>이상의 一般職인 國家 및 地</p>	<p>第1條(目的) 이 法은 公職者 및 公職 候補者의 財産登錄과 登錄財産 公開 를 制度化 하고, 公職을 利用한 財 産取得의 規制·公職者의 膳物申告·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등을 規定함 으로써 公職者의 不正한 財産増殖을 방지하고 公務執行의 公正性を 確保 하여 國民에 대한 奉仕者로서의 公 職者의 倫理를 確立함을 目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第2章 財産登錄 및 公開</u></p> <p>第3條(登錄義務者) ①----- ----- ----- -----</p> <p>1. <u>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國 會議員등 國家의 政務職公務員</u></p> <p>2. <u>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議 員</u></p> <p>3. <u>4級</u>-----</p>

方公務員과 이에 상당하는 報酬를 받는 別定職公務員	----- -----
3. 3級이상의 外務公務員·國家安全企劃部の 職員과 이에 상당하는 報酬를 받는 軍務員	4. 4級----- -----職員
4. 法官 및 檢事	5. -----
5. 將官級 將校	6. 大領이상의 將校 및 이에 상당하는 軍務員
6. 教育公務員중 總長·副總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및 教育監	7. ----- 大學院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포함한다) 및 專門大學長과 大學에 준하는 各種 學校의 長, 서울特別市·直轄市·道の 教育監·教育長 및 教育委員
7. 總警이상의 警察公務員과 消防監 또는 地方消防監이상의 消防公務員	8. -----消防正 -----地方消防正-----
8. 市長·郡守·區廳長 및 警察署長	(削 除)
9. 5級이상의 關稅廳 및 國稅廳所屬 公務員 (新 設)	(削 除)
	9.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總裁 및 監事, 銀行監督院長,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會長 및 常任監事

10. 다음 각目の 1에 해당하는 機關·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이하 "公職有關團體"라 한다)의 任員

가. 政府投資機關 및 政府의 出捐·補助를 받는 機關·團體  
 기타 政府業務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機關·團體

나.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地方公園 및 地方自治團體의 出捐·補助를 받는 機關·團體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業務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機關·團體

다. 任員의 選任에 있어서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등을 요하거나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員을 選任하는 機關·團體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階級·職位 또는 職務分野의 公務員과 公職有關團體의 職員

②登錄義務者의 財産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段階的으

10. -----  
 -----  
 -----  
 -----  
 가. -----  
 -----  
 -----  
 -----  
 나. -----  
 -----  
 -----  
 -----  
 -----  
 다. -----  
 -----  
 -----  
 -----  
 -----

11. 기타 國會規則·大法院規則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公務員과 公職有關團體의 職員  
②(削除)

로 實施할 수 있다.

第4條(登錄對象財産) ①登錄義務者가  
登錄할 財産은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의 財産(所有名義에 불구  
하고 事實상 所有하는 財産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本人
2. 配偶者(事實상의 婚姻關係에 있  
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本人의 直系尊卑屬. 다만, 出嫁  
한 女를 제외하며, 登錄義務者가  
婚姻으로 夫 또는 妻의 家에 入籍  
한 때에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

②登錄義務者가 登錄할 財産은 다음  
과 같다.

1. 不動産에 관한 所有權·地上權  
및 傳貰權
2. 鑛業權·漁業權 기타 不動産에  
관한 規定이 準用되는 權利
3. 大統領令이 정하는 動産·有價證  
券·無體財産權·債權·債務 및  
所得

第4條(登錄對象財産) ①-----

-----  
-----  
----- 財産, 非營  
利法人에의 出捐財産과 外國에 있는  
財産을 -----

1. ----
2. -----
3. -----

②-----  
-----

1. -----
2. -----
3. 다음 各目的 動産·有價證券·

債權·債務 및 無體財産權  
가.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이상  
의 現金(手票를 포함한다)  
나.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이상

의 預金

다.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이상  
의 株式·國債·公債·會社債等  
有價證券

라.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이상  
의 債權

마. 所有者別 合計額 1千萬원이상  
의 債務

바. 所有者別 合計額 500萬원이상  
의 金 및 白金(金製品 및 白金  
製品을 包含한다)

사. 品目當 500萬원이상의 寶石類

아. 品目當 500萬원이상의 骨董品  
및 藝術品

자. 券當 500萬원이상의 會員券

차. 所有者別 年間 1,000萬원이상  
의 所得이 있는 無體財産權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할 財  
産의 種類別 價額의 算定方法 또는  
表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土地는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  
에 관한 法律에 의한 公示地價

2. 아파트·연립주택 등 共同住宅은  
所得稅法에 의한 基準時價

3. 第2號의 共同住宅을 제외한 住宅

(新 設)

- 商街· 빌딩· 오피스텔 기타 不  
 動産은 垡地에 대하여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로 算定한 價額과 建物에  
 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  
 體가 告示하는 公正價額중 最高價  
 額(取得價額이 있는 경우에는  
 取得價額을 併記한다)으로 算定한  
 價額의 合計額
4. 不動産에 관한 規定이 準用되는  
 權利는 種類·數量·內容등 明細  
 (取得價額이 있는 경우에는 取得  
 價額을 포함한다)
5. 現金·預金·債權 및 債務는 그  
 金額
6. 國債·公債·會社債등 有價證券  
 은 額面價額
7. 株式중 上場株式은 財産登錄基準  
 日의 證券去來所 最終價格(證券去  
 來所가 財産登錄 基準日 이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最  
 終價格), 非上場株式은 額面價額
8. 合名會社·合資會社 및 有限會社  
 의 出資持分은 그 持分比率와 最  
 近事業年度의 그 會社 年間賣出額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할 財  
産의 表示方法, 所有者別 登錄對象  
財産의 범위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 設)

(新 設)

第5條(財産의 登錄機關과 登錄時期

9. 金 및 白金(金製品 및 白金製品  
을 포함한다)은 그 種類·합량과  
중량

10. 寶石類는 種類·크기·色相 등  
明細

11. 骨董品 및 藝術品은 種類·크기  
·作家 및 製作年代 등 作品의 明  
細

12. 會員券은 取得價額. 다만, 골프  
會員券은 所得稅法에 의한 基準時  
價로 한다.

④第3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登錄할  
財産의 價額 算定方法과 表示方法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에 대하  
여 所有者別로 그 財産의 取得日字  
·取得經緯·所得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  
産중 非營利法人에의 出捐財産은 다  
른 登錄對象財産과 구분하여 표시하  
고 그 法人에 있어서의 登錄義務者  
의 職位를 明示하여야 한다.

第5條(財産의 登錄機關과 登錄時期등)

등) ①公職者는 登錄義務者가 된 날로부터 1月이내에 登錄義務者로 된 날 現在의 財産을 다음 機關(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轉補·降任 또는 退職 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한 者가 3年이내에 다시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轉補·降任 또는 退職등을 한 날 이후 또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變動事項申告 이후의 變動事項에 대한 申告만으로 登錄에 갈음할 수 있다.

1. 國會議員 기타 國會所屬公務員은 國會事務處

2. 法官 기타 法院所屬公務員은 法院行政處

3. 軍人 및 軍務員은 國防部

4. 憲法裁判所長·憲法裁判所裁判官 및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은 憲法裁判所事務處

(新 設)

(新 設)

①-----날  
부터-----

3年(退職의 경우에는 1年)-----

1. -----

2. -----

(削除)

3. -----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各級選舉管理委員會 所屬公務員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處

5. 政府의 院·部·處·廳所屬公務員은 당해 院·部·處·廳.

(新 設)

5. 第1號 내지 第4號의의 登錄義務  
者는 總務處

6. 監查院所屬公務員은 監查院事務處

7. 國家安全企劃部所屬公務員은 國  
家安全企劃部

8. 地方自治團體所屬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9. 地方議會議員과 地方議會所屬公  
務員은 당해 地方議會

10.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所  
屬公務員은 서울特別市·直轄市·  
道教育廳

11.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委員  
會의 教育委員은 당해 教育委員會

12.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은 당해  
公職有關團體를 監督하는 院·部·  
處·廳. 다만, 서울特別市·直轄  
市·道の 監督을 받는 公職有關團  
體의 任職員의 경우에는 서울特別  
市·直轄市·道로 한다.

13. 第1號 내지 第12號의의 登錄義務  
者, 第5號 내지 第7號 및 第12號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의  
院·部·處·廳所屬公務員과 監查  
院·國家安全企劃部所屬公務員 및  
公職有關團體의 任員으로서 第10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登

②第1項 但書의 경우에 登錄機關이 종전의 登錄機關과 相異한 때에는 종전의 登錄機關의 長은 轉補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한 者가 다시 登錄義務者로 된 날로부터 1月이내에 當該人의 財産登錄에 관한 書類를 새로운 登錄機關의 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登錄義務者가 轉補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함이 없이 登錄機關이 變更된 때에도 또한 같다.

第6條(變動事項申告) ①登錄義務者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財産上의 變動事項을 다음해 1月중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登錄後 또는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후 최초의 變動事項申告에 있어서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로부터 그해의 12月 31日까지 사이의 變動事項을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新 設)

錄事項을 公開하는 公職者는 總務處

②-----  
-----  
-----  
-----  
-----  
-----  
-----  
-----  
-----  
-----

第6條(變動事項申告) ①-----

-----  
-----  
-----  
-----  
-----  
-----  
-----  
-----  
-----  
-----  
-----  
-----  
-----

날부터

②登錄義務者가 退職한 때에는 退職 후 1月이내에 그해의 1月 1日(1月 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賣買契約書·領收證等(寫本을 포함한다) 그 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財産상의 變動事項의 범위와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登錄期間의 延長) 登錄機關의 長은 登錄義務者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財産登錄(申告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期間의 延長을 申請한 경우에 그 事由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財産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한 登錄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義務者는 延長된 期間이내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日이후에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부터 退職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財産上の 變動事項을 退職당시의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退職후 1月이내에 다시 登錄義務者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④第1項 및 第2項의-----

第7條(登錄期間의 延長) -----  
-----登錄義務者(第6條第2項의 退職公職者를 포함한다. 이하 第8條, 第10條, 第12條 및 第13條에서 같다)가-----

第8條(登錄事項의 審査 및 調査) ①

登錄機關의 長은 登錄된 事項을 審査 하여야 한다.

②登錄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錄義務者에게 資料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書面으로 質疑를 할 수 있다.

③登錄機關의 長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職有關團體 기타 公共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資料의 提出등 協助를 要求할 수 있다.

④登錄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搜查結果, 財産隱匿 또는 虛偽登錄의 嫌疑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에 대하여는 管轄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法務部長官(軍人 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調査를 依頼하여야 한다.

第8條(登錄事項의 審査) ①第9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한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된 事項을 審査하여야 한다.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가 登錄財産의 一部를 過失로 漏落하거나 價額合算등에 誤記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 期間을 정하여 財産登錄書類의 補完을 命할 수 있다.

③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錄義務者에게 資料의 提出要求 또는 書面質疑를 하거나 事實確認을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에게 解明 및 疏明資料提出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職有關機關 기타 公共機關 또는 金融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報告나 資料提出등을 要求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機關·團體의 長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報告나 資料提出등을 拒否할 수

⑤法務部長官 또는 國防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依頼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실시하게 하고, 그 調査結果를 登錄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 또는 檢察官의 調査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法令(軍事法院法을 포함한다)중 搜查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人身拘束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結果의 通報를 받은 登錄機關의 長은 財産隱匿 또는 虛偽登錄을 한 登錄義務者의 所屬機關·團體의 長에게 財産隱匿 또는 虛偽 登錄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新 設)

없다.

⑤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와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기타 財産登錄事項의 關係人에 대하여 出席을 요구하고 陳述을 받을 수 있다.

⑥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虛偽登錄의 嫌疑가 있다고 의심되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는 期間을 정하여 法務部長官(軍人 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法務部長官 또는 國防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依頼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실시하게 하고, 그 調査結果를 公職者倫理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 또는 檢察官의 調査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法令(軍事法院法을 포함한다)중 搜查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人身拘束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新 設)

아니하다.

㉑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虛偽 登錄의 嫌疑가 인정되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는 所屬機關·團體의 長에게 虛偽登錄事實을 通報하여 懲戒 기타 적절한 措置를 要求하거나 告發하여야 한다.

(新 設)

㉒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變動申告事項을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한 後 3月이내에 財産公開對象 公職者 全員에 대한 審査를 完了하여야 한다.

(新 設)

㉓公職者倫理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財産公開對象者가 아닌 登錄義務者의 登錄事項에 대한 審査를 그 登錄機關의 長 기타 關係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그 委任을 받은 機關의 長은 審査結果를 管轄 公職者倫理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新 設)

㉔第2項 내지 第8項의 規定은 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賴를 하고자 할

(新 設)

때에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8條의2(審査結果의 處理) ①第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者倫理委  
員會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事項의 審査結果 第4條에 規定하는  
登錄對象財産을 虛僞로 기재한 事實  
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  
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警告 및 是正措置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賦課
3. 日刊新聞 廣告欄을 통한 虛僞登  
錄事實의 公表
4. 解任 또는 懲戒(罷免을 포함한  
다) 議決要請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 各號의  
措置중 第3號의 措置는 다른 措置에  
부수하여 併科할 수 있다.

第9條(公職者倫理委員會) ①다음 各號  
의 事項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國會·大法院·憲法裁判所 및 政府  
에 각각 公職者倫理委員會를 둔다.

第9條(公職者倫理委員會) ① -----  
----- 審査 -----  
國會, 大法院, 憲法裁判所, 中央選  
舉管理委員會, 政府, 地方自治團體  
및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에

1.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

(新 設)

2. 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

(新 設)

②가 公職者倫理委員會의 管轄은 다음과 같다.

1.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會議員 기타 國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2. 大法院公職者倫理委員會는 法官 기타 法院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3. 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裁判官 기타 憲法裁判所 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新 設)

1. 第10條第1項에 規定하는 財産公 開對象 公職者에 대한 登錄事項의 審査와 그 結果의 處理

2. 第8條第1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承認

3. -----  
-----

4.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 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權限으로 정한 事項

② -----  
-----

1. -----  
-----  
-----

2. -----  
-----  
-----

3. -----  
-----  
-----  
-----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各 級 選舉管理委員會 所屬公務員과

(新 設)

(新 設)

(新 設)

4.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公職者와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③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 審議·  
 決定의 節次와 기타 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  
 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5. 서울特別市·直轄市·道公職者倫  
 理委員會는 서울特別市·直轄市·  
 道所屬公務員, 管轄公職有關團體  
 의 任職員, 서울特別市·直轄市·  
 道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6. 市·郡·區(自治區인 區에 한한  
 다. 이하 같다)公職者倫理委員會  
 는 市·郡·區所屬公務員, 市·郡·  
 區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7.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公  
 職者倫理委員會는 서울特別市·直  
 轄市·道教育廳所屬公務員 및 教  
 育委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8.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號  
 내지 第7號외의 公職者와 그 退職  
 公職者에 관한 事項  
 ③公職者倫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  
 委員長 各1人을 포함한 9人으로 構  
 成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은  
法官·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  
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1人을 포함  
한 5人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을 포  
함한 3人은 法官·教育者 또는 學識  
과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選任하여  
야 한다.

(新 設)

④公職者倫理委員會의 委員의 任期,  
選任 및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  
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定한  
다.

1.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會規  
則
2. 大法院公職者倫理委員會는 大法  
院規則
3. 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規則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  
員會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5.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大統領  
令
6. 서울特別市·直轄市·道公職者  
倫理委員會 및 市·郡·區公職者倫  
理委員會와 서울特別市·直轄市·

第10條(登錄財産의 非公開) ①登錄義務者의 財産에 관한 登錄事項은 非公開를 原則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登錄義務者의 登錄事項은 이를 公開할 수 있다.

道 教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⑤公職者倫理委員會는 이 法과 第4項 各號에 規定된 規則·大統領令 또는 條例의 범위안에서 그 運營에 관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條(登錄財産의 公開) ①公職者倫理委員會는 管轄登錄義務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職者 本人과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의 財産에 관한 登錄事項과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變動事項 申告內容을 登錄 또는 申告期間滿了後 1月이내에 官報 또는 公報에 掲載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1.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國會議員·國家安全企劃部の 部長 및 次長등 國家의 政務職公務員

2.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議員

3. 1級인 一般職 國家 및 地方公務員과 이에 相當하는 報酬를 받는 別定職 公務員

4. 特1級·特2級 및 1級인 外務公務員과 國家安全企劃部の 企劃調整室長

5. 高等法院部長判事級이상의 法官  
과 檢事長級이상의 檢事 및 次長檢  
事를 두는 支廳의 長인 檢事
6. 中將이상의 將官級 將校
7. 教育公務員중 總長·副總長·學  
長(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및  
專門大學長과 大學에 準하는 各種  
學校의 長, 서울特別市·直轄市·  
道の 教育監 및 教育委員
8. 治安監이상의 警察公務員 및 서  
울特別市·直轄市·道の 警察廳長
9. 地方國稅廳長 및 2級 또는 3級  
公務員인 稅關長
10.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  
總裁 및 監事, 銀行監督院長, 農業  
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  
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會  
長·常任監事 및 大統領令이 정하  
는 公職有關團體의 任員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의  
公務員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職에서 退  
職한 者(第6條第2項의 경우에 한하  
다)

②누구든지 登錄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登錄義務者의 財産에 관한 登錄事項을 閱覽·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登錄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登錄義務者에 대한 犯罪搜查 또는 非違調査나 이에 관련된 裁判상 필요가 있는 경우

(新 設)

2.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長이 所屬公職者의 非違事件관련 여부를 判斷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公職者倫理委員會 또는 登錄機關의 長의-----

③公職者倫理委員會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 許可를 할 수 없다.

1. -----  
-----  
-----

2. 國會議員이 國會法 第128條第1項,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第10條 第1項,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政監査·調査등의 資料를 요구하거나 議政活動으로서 特定公職者의 구체적 非違事件 관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財産登錄事項의 全體細目을 外部에 公開할 수 없다.

3. -----  
-----  
-----

3. 登錄義務者 또는 登錄義務者였던  
者가 本人의 登錄事項에 대하여 閱  
覽 또는 複寫를 요구하는 경우

④ 第1項 但書의 경우에 公開의 方法  
· 程度 등 節次에 관한 事項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

(新 設)

4. -----  
-----  
-----

(削 除)

第10條의2(公職選舉候補者등의 財産公  
開) ①大統領·國會議員·地方自治  
團體의 長·地方議會議員 選舉의 候  
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候補者登  
錄을 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 財産에 관한 申告書  
를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提出하고,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公  
告時에 候補者의 財産申告事項을 公  
開하여야 한다.

②大法院長·憲法裁判所의 長·國務  
總理·監查院長·大法官·國會事務  
總長等 그 任命에 國會의 同意를 要  
하는 公職者의 任命同意案 또는 憲  
法裁判所裁判官·中央選舉管理委員  
會委員等 國會에서 選出하는 公職者  
의 選出案을 提出하는 때에는 當해  
公職候補者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  
에 의한 登錄對象 財産에 관한 申告

書를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議長은 지체없이 그 公職候補者의 財産申告事項을 公開하여야 한다.

③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와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財産申告事項을 審査하여 그 審査結果를 公開할 수 있다.

④第3項의 審査에는 第8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申告書의 書式 · 公開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 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2條(誠實登錄義務등) ①登錄義務者는 財産을 誠實히 登錄하여야 한다.

②登錄義務者는 登錄機關의 長등의 登錄事項에 대한 審査 및 調査에 誠實히 應하여야 한다.

③第4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者는 登錄義務者의 財産登錄이나 登錄機關의 長등의 登錄事項의 審査 및

第12條(誠實登錄義務등) ①登錄義務者는 第4條에 規定하는 登錄對象財産과 그 價額 · 取得日字 · 取得經緯 · 所得源등을 財産登錄書類에 虛偽로 記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公職者倫理委員會등의-----  
----- 審査에 -----  
-----

③-----  
-----公職者  
倫理委員會등의 ----- 審査에

調査에 協助하여야 한다.

④登錄義務者는 第4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者의 歸責事由로 이들의 財産을 성실하게 登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第13條(財産登錄事項의 目的의 利用 禁止등) 登錄義務者는 不實登錄 기타 이 法에 정한 事由외에는 登錄된 事項을 이유로 不利益한 處遇나 處分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財産 登錄事項을 이 法에 정한 目的의 外로 利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新 設)

第15條(外國政府등으로부터의 贈物受領申告) ①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外國 또는 그 職務와 關連하여 外國人(外國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贈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所屬機關·

성실히 應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條第3號의 者중 被扶養者가 아닌 者는 자신의 財産登錄事項의 告知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登錄義務者는 財産登錄書類에 그 事由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13條(財産登錄事項의 目的의 利用 禁止등) -----虛僞登錄-----

第14條의2(職務上 秘密을 이용한 財物 取得의 禁止) 登錄義務者는 그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利用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 利益을 取得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外國政府등으로부터의 贈物受領申告) ①公務員(地方議會議員 및 教育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第22條 第1項·第23條第1項에서 같다)-----

團體의 長에게 申告하고 당해 膳物을 引渡하여야 한다. 이들의 家族이 外國 또는 당해 公務員이나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의 職務와 관련하여 外國人으로부터 膳物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생략)

第17條(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에의 就業制限) ①(생략)

②第1項의 경우 退職公職者의 擔當義務와 營利私企業體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營利私企業體의 規模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就業承認申請) 第17條第1項 但 書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承認을 얻고자 하는 退職公職者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機關의 長을 거쳐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에 就業承認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19條(就業者의 解任要求 등)①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長과 國家機關·地

-----  
-----  
-----  
-----  
-----  
-----

②(現行과 같음)

第17條(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에의 就業制限) ①(現行과 같음)

②-----  
-----  
-----  
-----  
-----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

第18條(就業承認 申請) -----  
-----  
-----  
-----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  
-----

第19條(就業者의 解任要求 등)①-----  
-----

方自治團體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長은 당해 機關·團體에 在職하였던者(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長의 경우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이 제한된 者)로서 第17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就業한 者가 있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國會에 있어서는 國會事務總長, 法院에 있어서는 法院行政處長, 憲法裁判所に 있어서는 憲法裁判所事務處長. 이하 같다)에게 當該人에 대한 就業解除措置의 강구를 要請하여야 하며, 要請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當該人이 就業하고 있는 營利私企業體의 長에게 그 解任을 要求하여야 한다.

②(생략)

第20條(企劃·總括機關) 總務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財產登錄·膳物申告 및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에 관한 企劃·總括業務를 管掌한다.

(新 設)

憲法裁判所事務處長,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이하 같다) -----

② (現行과 같음)

第20條(企劃·總括機關) -----

財產登錄 및 公開 -----

第20條의2(國會에의 報告) ①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大法院公職者倫理委員會·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

第21條(施行令) 이 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大法院規  
則·憲法裁判所規則 또는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

第22條(懲戒등) 公務員 또는 公職有  
關團體의 任·職員이 第5條第1項,  
第6條第1項·第2項, 第10條第2項(第  
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第11條第1項, 第12條第1  
項·第2項, 第13條(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4條  
(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  
定을 違反한 때에는 所屬機關·團體  
의 長은 이를 事由로 하여 懲戒 議  
決을 要求할 수 있다.

員會·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每年  
定期國會에 前年度의 財産登錄·膳  
物申告 및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에  
관한 實態와 監督 기타 活動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年次報告書 作成에 필요  
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委任規定) -----  
-----  
----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  
委員會規則·大統領令 또는 地方自  
治團體의 條例로 -----.

第22條(懲戒등) 公職者倫理委員會는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  
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를 事由로 하여 解任 또는  
懲戒議決을 要求할 수 있다.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登錄을 하지 아니한 때
2. 第6條第1項·第3項 및 第11條第  
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變動事項申  
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疏明資料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第10條第2項(第11條第2項에서 準  
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없이 登錄事項을 閱覽·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虛偽登錄등 不誠實하게 財産登錄을 한 때

5.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등의 登錄事項의 審査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第13條 後段(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登錄事項을 이 법이 정한 외의 目的으로 利用한 때

7. 第14條(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登錄事項을 다른 사람에게 漏泄한 때

8. 第1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받은 贈物을 申告하거나 引渡하지 아니한 때

第23條(罰則) ①第10條第2項(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4條(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3條(職務上 秘密을 이용한 財物取得의 罪) ①公務員, 政府投資機關(再投資機關을 포함한다) 및 地方公企業法 第5條·第49條·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直營企業·地方公社 및 地方公園의 任職員이 그 職務上

②第1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24條(罰則) 第17條第1項 또는 第19  
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  
金에 處한다.

지득한 秘密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  
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③第1項의 罪를 범한 者 또는 그 情  
을 아는 第3者가 第1項의 罪로 인하  
여 取得한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  
은 이를 沒收 또는 追徵한다.

第24條(財産登錄拒否의 罪) ①財産登  
錄義務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第5條  
의 規定에 의한 財産登錄을 拒否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0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  
에 의한 公職選舉候補者등이 正當한  
사유없이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  
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條(虛偽資料提出등의 罪) 公職者  
倫理委員會(第8條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로 부터

財産登録事項에 관한 權限을 委任받  
은 登録機關의 長등을 포함한다. 이  
하 第26條에서 같다)로 부터 第8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나 資料  
提出등을 요구받은 各 機關·團體의  
長이 正當한 사유없이 虛偽報告나  
虛偽資料를 提出한 때에는 1年이하  
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第26條(出席拒否의 罪) 公職者倫理委  
員會로부터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登録事項의 審査를 위하여 出席  
을 요구받은 登録義務者 기타 參與  
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出席要求에  
不應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7條(無許可 閱覽·複寫의 罪) 第10  
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없  
이 財産登録事項을 閱覽·複寫하거  
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第28條(秘密漏泄의 罪) 第14條의 規定  
에 違反하여 財産登録業務에 從事하

거나 하였던 者 또는 그 밖의 者로  
서 職務上 財産登錄事項을 알게 된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公開된 財産  
登錄事項의 財産登錄事項을 漏泄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9條(就業制限違反의 罪) 第17條第  
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退職公職者  
가 營利私企業體에 就業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第30條(過怠料) ①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8條의2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  
여 過怠料賦課對象者로 決定한 者에  
대하여는 2,0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過怠  
料賦課對象者에 대하여는 그 違反事  
實을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  
裁判의 管轄法院에 通報하여야 한  
다.

공백

法制司法委員會 體系·字句審查修正內容

代 案	修 正 內 容
<p>第26條(出席拒否의 罪)</p> <p>公職者倫理委員會로 부터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登錄事項의 審査를 위하여 出席을 要求받은 登錄義務者 기타 參考人이 正當한 사유 없이 出席要求에 不應한 때에는 6월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26條(出席拒否의 罪)</p> <p>----- 第8條</p> <p>第5項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를 받은 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p> <p>-----</p> <p>-----</p> <p>-----</p>

※ 修正理由 : 代案 第26條중 "기타 參考人"은 案 第8條第5項의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기타 財産登錄事項의 關係人"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타 參考人"은 罪刑法定主義와 관련하여 다소 不正確한 用語로 보이며, 解釋上 誤解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修正함.

공백